

의안번호	2217212
의 퇴 인	엄태영 의원
회 답 일	2026. 4. 22.
추계번호	26F12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0.6억원, 2029년 0.6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.8억원(연평균 0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(안 제7조제1항)	-0.6	-0.6	-0.6	-1.8	-0.6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제1항 (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)	○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→ (개정안) 2029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제1항 (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전제
 - 향후 농기계류 등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,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취득 당해연도에 전액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취득세는 취득일 후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하도록 규정(「지방세법」 제20조)
- 향후 농기계류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향후 동 제도에 따른 감면액은 최근 5년간(2020~2024년)간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
 - － 동 제도의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2020년 0.5억원에서 2021년 0.3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4년 0.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증감추이가 일정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농업용 농기계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제도
 -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(안 제7조제1항)
 - － 감면대상: 농업용(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)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업기계
 - ※ 농업기계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상 농업기계로, 농림축산물 등의 생산, 생산후 처리,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, 설비 및 부속 기자재를 의미
 - － 감면율: 100%
 - ※ 단, 동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저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동법의 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, 85%의 감면율만 적용
 - －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29.12.31.
- (감면실적)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0년 0.5억원에서 2024년 0.9억원으로 변동

- 동 제도에 따른 취득세 감면실적은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음

[표 2] 농업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 (‘20~’24년)
감면실적	0.5	0.3	0.5	0.9	0.9	0.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-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5년(2020~2024년) 감면실적의 연평균 수준을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취득세 감면액은 최근 5년(2020~2024년)의 연평균 감면액(0.6억원)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효과: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
세수 감소효과	0.6	0.6	0.6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, 지방세는 2027년 0.6억원, 2029년 0.6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.8억원(연평균 0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취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(안 제7조제1항)	-0.6	-0.6	-0.6	-1.8	-0.6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